

의안번호	2217827
의 퇴 인	허종식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계번호	26B1936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역학조사 등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(死傷)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독성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8조의2(역학조사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(死傷)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시 역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하고, 이를 위한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·운영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」 사업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독성영향평가 및 역학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6억

5,000만원임

[표 1]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평가 및 역학영향평가 사업 관련 예산 현황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
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(2206-306)	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운영 (가습기 살균제 독성화학물질 건강영향조사)	·가습기살균제 독성화학물질 건강영향조사 : 2,650 -독성영향 평가 분야 보건센터 총 3개소 운영비 : 1,950 -역학영향 분야 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: 400 -임상의학 분야 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: 3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포함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해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결과에 따르면,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관련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통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독성연구 및 역학조사의 규모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